

# 특정소방대상물 용도별 소방계획서 개정 및 작성 안내

## □ 추진배경

-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(시행 '22.12.1)으로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확대
  - 소방계획서(안)을 전면 개정, 이해가 쉽고 작성 편리성 제공 필요성 제기

### < 추진 경과 >

- 소방계획서 개선 TF구성(3월~5월, 7명(소방청3 + 안전원4))
- 소방계획서 작성 자문단(7명) 회의(4.11. 안전원)
- 소방계획서 작성 전문가 회의(5.2. 소방청 / 5.11. 안전원)
- 소방계획서(안) 시도 의견수렴 추진('23.7.19.~7.28.)

## □ 개정개요

- 특정소방대상물 종류별 소방계획서 작성, 서식과 매뉴얼을 분리 편의성 제공
  - ① 특정소방대상물을 종류별 소방계획서 작성
    - (현재) 특정소방대상물 종류에 관계없이 소방계획서 1종(특급·1급, 2·3급)
    - (개선) 특정소방대상물 종류에 따라서 소방계획서 10종(그룹화\*)
      - \* 집회, 상업, 주거숙박, 교육연구, 의료·노유자, 업무관리, 공장 등 공업, 창고, 통신터널, 교정·군사
  - ② 소방계획서 작성 매뉴얼 등을 제공하여 작성 편의성 제공
    - (현재) 서식과 매뉴얼 통합되어 작성 어려움
    - (개선) 서식, 작성매뉴얼(작성 방법·예시, 부록)로 분리 편의성 제공
  - ③ 소방계획서를 소방안전관리계획, 자위소방대 운영계획, 피난계획으로 구성

## □ 시 행 일 ⇨ 2024. 01. 01.

- [서대문소방서 홈페이지](#) > [민원안내](#) > [민원서식](#) > [소방안전관리](#) 참조

연번	주용도	세부용도		
1	집회	<input type="checkbox"/> 관광휴게시설 <input type="checkbox"/> 묘지관련시설 <input type="checkbox"/> 장례시설	<input type="checkbox"/> 문화집회시설 <input type="checkbox"/> 운동시설 <input type="checkbox"/> 종교시설	<input type="checkbox"/> 문화재 <input type="checkbox"/> 운수시설
2	상업	<input type="checkbox"/> 근린생활시설 <input type="checkbox"/> 지하가(상가)	<input type="checkbox"/> 위락시설 <input type="checkbox"/> 복합건축물	<input type="checkbox"/> 판매시설
3	주거·숙박	<input type="checkbox"/> 공동주택 <input type="checkbox"/> 복합건축물	<input type="checkbox"/> 수련시설	<input type="checkbox"/> 숙박시설
4	교육·연구	<input type="checkbox"/> 교육연구시설		
5	의료·보호	<input type="checkbox"/> 의료시설	<input type="checkbox"/> 노유자시설	
6	업무·관리	<input type="checkbox"/> 업무시설 <input type="checkbox"/> 복합건축물	<input type="checkbox"/> 동·식물 관련시설	<input type="checkbox"/> 방송통신시설
7	공업	<input type="checkbox"/> 공장 <input type="checkbox"/>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<input type="checkbox"/> 자원순환 관련시설 <input type="checkbox"/>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시설	<input type="checkbox"/> 발전시설	
8	창고	<input type="checkbox"/> 창고		
9	지하·터널	<input type="checkbox"/> 지하구	<input type="checkbox"/> 지하가(터널)	
10	특수	<input type="checkbox"/> 교정시설	<input type="checkbox"/> 군사시설	

※ 선임된 건축물의 주된 용도를 ‘건축물관리대장’을 통해 확인한 후  
상기 표의 용도별 그룹에 해당하는 소방계획서 선택 작성

예) 건축물대장 상 관광휴게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집회용도 소방계획서 작성